메기랜드 노량진캠퍼스

객관식진도학습

부동산공법 고상철 교수 1회 (03/11)

01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전까지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
- ②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③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.
- ④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,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이 우선하므로 틀린부분을 발췌하여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야한다.
-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.
- 02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2 이상의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, 환경을 보전하며,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. 여기서 일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단위로 올바른 것은?

① 특·광·시·군

② 읍·면·동

③ 시·구·읍·면·동

④ 구·군·읍·면

⑤ 시·군·구·동

- 03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령상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에 대한 설명이다. 올바르지 않은 것은?
- ①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.
- ② 광역계획권이 2 이상의 시·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·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.
- ③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.
- ④ 시·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.
- ⑤ 시장·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시장·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.

객관식진도학습

부동산공법 고상철 교수 1회 (03/11)

04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·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?

- ① 기초조사의 내용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②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.
- ③ 도시·군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정도,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을 차등화되게 입안하여야 한다.
- ④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물의 배치·형태·색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때에는 건축위원회와 도 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.

05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령상 도시·군관리계획의 입안절차에 관한 설명이다. 틀린 것은?

- ① 도시·군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,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·산·어촌 지역의 인구밀도,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차등화되게 입안하여야 한다.
- ②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·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·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도시·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(동시입안)할 수 있다.
- ③ 도시·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·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.
- ④ 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·시가화조정구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도시·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·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적극적 참여 절차를 두고 있다.
- 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관한 규정은 도시·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기초조사의 내용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.

06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령상 도시·군관리계획의 입안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?

-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는 도시·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인구·경제·사회·문화·토지이용·환경·교통·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중 당해 도시·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.
- 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·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도시·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의 견 있는 자는 열람기간이 끝난 후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.
- ③ 주민의견청취절차를 임의로 생략할 수 있으며 이를 생략하고 도시·군관리계획을 입안·결정하더라도 이는 무효가 되지 아니하며 이를 이유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.
- ④ 경미한 도시·군관리계획사항의 입안시에는 주민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- ⑤ 도시·군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·고시한다.



객관식진도학습

부동산공법 고상철 교수 1회 (03/11)

7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·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
- ① 도시·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과 변경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지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하는 것은 아니다.
- ② 도시·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계획의 위계질서 유지를 위하여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·군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만 도시·군관리계획을 입안 할 수 있다.
- ③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산업·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도시·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.
- ④ 도심지의 상업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환경성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⑤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· 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.



객관식진도학습

부동산공법 고상철 교수 1회 (03/11)

객관식진도학습 1회 정답

1. 정답: ③

- ①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
- ②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.
- ④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,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. 단, 타당성검토에 관한 규정은 도시·군기본계획과 도시·군관리계획만 해당되고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검토에 관한 규정은 명문에 없다.
-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.
- 2. 정답: ④ 구·군·읍·면 단위가 일부의 최소단위이다.
- 3. 정답: ③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 시 3년 이내에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것이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다.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4. 정답: 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은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이 결정한다.
- 5. 정답: ④ 주민(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)이 도시·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·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은 도시·군관리계획의 내용 중 다음의 4가지에 한한다.
- ①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
-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다.
- ③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,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을 대체하는 사항
- ④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·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

6. 정답: ④

- ① 기초조사는 필수사항으로서 반드시 하여야 한다.
- ② 열람기간이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.
- ③ 주민의견청취절차를 임의로 생략하고 도시·군관리계획을 결정할 경우 이는 무효사유이며 이를 이유로 행정생송을 제기할 수 있다.
- ⑤ 도시·군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시·도지사, 대도시시장(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경우만 시장·군수가 결정)이 결정하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·고시한다.
- 7. 정답: ②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·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·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도 시·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.